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의 보육·교육활동 및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경범죄(인근소란 등)에서 제외〉

■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92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천하람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6. 5. 4.
3. 회부연월일 : 2026. 5.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영유아의 보육·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및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인근 주민이 112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등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운동회 및 교육활동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같은 호의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놀이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근소란 등 경범죄에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유치원·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1호).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 ----- ----- -----.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1. ----- ----- ----- ----- ----- -----.
<u><단서 신설></u>	<u>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신 설></u>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22. ~ 41. (생 략) ② · ③	<u>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u> <u>따른 교육활동으로 인한 경우</u> <u>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u> <u>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u> <u>따른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u> <u>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u> <u>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서</u> <u>아동의 놀이활동으로 인한 경우</u> 22. ~ 4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는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경범죄 처벌법」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육·교육·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에 대해서도 경찰에 신고가 제기될 수 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350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345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조사됨.¹⁾

경찰청은 운동장 소음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을 자제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함. 경찰청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이 같은 행동은 「형법」 제20조²⁾에 따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유치원·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의 아동의 놀이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인근소란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범죄를 이유로 한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학생들이 놀이 및 체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³⁾이 이웃의 일상생활 평온을 해할 정도의 소란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 제외 사유를 보육·교육·놀이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소리로 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입법례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⁴⁾은 학교의

1) 이데일리 2026년 5월 16일 기사, “‘애들 시끄럽다’ 운동회 소음 신고에…‘출동 자제하라’ 경찰청 지시”

2)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노1274

4) 「아동복지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 따른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학교 운동회 등 어린이 교육활동과 어린이 공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놀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인근 주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집회·시위⁵⁾나 지역 축제 및 종교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⁶⁾도 개별 법률상 기준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음에도, 어린이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제17조(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팽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6)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소음만 제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교육활동 및 놀이활동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소음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교육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교육부는 학교 운동회 및 운동장 체육활동 등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하는 학생들의 활동 소리에 대해 소음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에서 제외하여 학교가 민원 부담 없이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
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
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